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온국민 TDF 202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 ③ 1. ~ 12. 생략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 ③ 1. ~ 12. 좌동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 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 ③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 나. ~ 라. 좌동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44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0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15</u>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	책임: 주형준/ 류범준
	수익률 변동성: 8.13%	수익률 변동성: 8.74%
	<p>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</p>	

- KB 온국민 TDF 2025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</p> <p>나. ~ 라. 좌동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44</u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0</u>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15</u>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투자설명서	<p>책임: 주형준</p>	<p>책임: 주형준/류범준</p>
	<p>수익률 변동성: 8.33%</p>	<p>수익률 변동성: 8.87%</p>
	<p>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</p>	

- KB 온국민 TDF 2030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[202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[202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~ 라. 좌동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	책임: 주형준/ 류범준
	위험등급: 4등급(보통 위험)	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
	수익률 변동성: 9.79%	수익률 변동성: 10.68%
	<p>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</p>	

- KB 온국민 TDF 2035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<u>[2020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<u>[202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<u>[2020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<u>[202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~ 라. 좌동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
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	책임: 주형준/ 류범준
	수익률 변동성: 11.72%	수익률 변동성: 12.51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은국민 TDF 2040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 ③ 1. ~ 12. 생략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 ③ 1. ~ 12. 좌동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	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 나. ~ 라. 생략 [2025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	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 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 나. ~ 라. 생략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

	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 나. ~ 라. 생략 [203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 나. ~ 라. 생략</p>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[2025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 나. ~ 라. 생략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[203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 나. ~ 라. 좌동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 수익률 변동성: 14.03%	책임: 주형준/류범준 수익률 변동성: 14.74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온국민 TDF 2045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 ③ 1. ~ 12. 생략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 ③ 1. ~ 12. 좌동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</p>

	<p>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[2030년 01월 0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[203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[2030년 01월 0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[203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~ 라. 좌동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	
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	책임: 주형준/ 류범준
	수익률 변동성: 16.26%	수익률 변동성: 16.87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온국민 TDF 2050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생략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좌동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<u>[최초설정일로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<u>[2035년 01월 0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<u>[204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</u>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<u>[최초설정일로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2.25</u>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2.25</u>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2.68</u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0</u>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15</u></p> <p><u>[2035년 01월 0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</u></p>

	<p><u>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 1. ~ 16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 나. ~ 라. 생략</p>	<p><u>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 1. ~ 16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80</u> 나. ~ 라. 생략 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80</u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2.04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0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15</u> <u>[204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 1. ~ 16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 나. ~ 라. 좌동 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35</u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44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0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15</u></p>
	*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주형준	책임: 주형준/ <u>류범준</u>
	수익률 변동성: 17.58%	수익률 변동성: <u>18.25%</u>
	*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온국민 TDF 2055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H)

- KB 온국민 TDF 2055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UH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 ③ 1. ~ 13. 생략 14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 ③ 1. ~ 13. 좌동 14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5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</p>

		<p>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[2040년 01월 01일부터 204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[204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[2040년 01월 01일부터 204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8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0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[2045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6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~ 라. 좌동</p> <p>(신설) 17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3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투자설명서	<p>책임: 주형준</p> <p>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</p>	<p>책임: 주형준/류범준</p>

- KB 다이나믹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p>신탁계약서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<u>[최초설정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2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<u>[203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<u>[최초설정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88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88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<u>[203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98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
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98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다이나믹 TDF 2040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2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[204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88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88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/p>

	나. ~ 라. 생략	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[204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 <p>1. ~ 15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98</p> <p>나. ~ 라. 생략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98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다이내믹 TDF 2050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4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[최초설정일로부터 204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p>

	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2 나. ~ 라. 생략 <u>[205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 나. ~ 라. 생략</p>	<p>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2.88</u> 나. ~ 라. 생략 <u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u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88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68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<u>[2050년 01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]</u>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1.98</u> 나. ~ 라. 생략 <u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u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1.98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4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다이내믹 TDF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 ③ 1. ~ 12. 생략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 ③ 1. ~ 12. 좌동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 <u>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</u></p>

		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
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 나. ~ 라. 생략	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 ③ 1. ~ 15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 나. ~ 라. 생략 (신설) 16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2.2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28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	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	

- KB 타겟리턴 안정형 OCIO 증권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

		<p>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7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 ③ 1. ~ 17. 좌동</p> <p>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6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<p>투자설명서</p>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</p> <p>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4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도출합니다.</p> <p>2) 중장기 자산배분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비중을 도출합니다. 또한 자산 별 투자비중을 토대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스타일 배분안을 통해 선정된 집합투자증권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</p> <p>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4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 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주기적으로 도출합니다.</p> <p>- 기준금리, 크레딧 스프레드, 경제 성장률, CPI 추이, 배당 수익률 및 관련 자산의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군 별 장기 기대수익 및 위험을 산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배분안을 구성합니다.</p> <p>- 여러 효율적 배분안 중, 장기 투자로 인한 손실 확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 할 수 있는 배분안을 중장기 자산배분 안으로 선정합니다.</p> <p>2)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합니다.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 비중을 도출하며 해당 비중은 허용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. 최종 포트폴리오는 주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되며,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해당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p>

- KB 타겟리턴 성장형 OCIO 증권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7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7. 좌동</p> <p>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6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</p>
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</p> <p>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5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도출합니다.</p> <p>2) 중장기 자산배분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비중을 도출합니다. 또한 자산 별 투자비중을 토대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스타일 배분안을 통해 선정된 집합투자증권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</p> <p>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5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 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<u>주기적으로</u> 도출합니다.</p> <p>- 기준금리, 크레딧 스프레드, 경제 성장률, CPI 추이, 배당 수익률 및 관련 자산의 과거 수익률 등을 <u>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군 별 장기 기대수익 및 위험을 산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배분안을 구성합니다.</u></p> <p>- <u>여러 효율적 배분안 중, 장기 투자로 인한 손실 확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 할 수 있는 배분안을 중장기 자산배분 안으로 선정합니다.</u></p> <p>2) 중장기 자산배분 <u>안</u>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합니다.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 비중을 <u>도출하며 해당 비중은 허용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. 최종 포트폴리오는 주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되며,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해당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u></p>

- KB 타겟리턴 적극형 OCIO 증권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12. 생략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p> <p>③ 1. ~ 12. 좌동</p> <p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 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5. C-퇴직i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</p>

	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	<p>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6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17. C-퇴직i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[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한 가입 불가]</p> <p>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 의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p>
	<p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7.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 ③ 1. ~ 17. 좌동 (신설) 18. O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4.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6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
<p>투자설명서</p>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 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6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도출합니다. 2) 중장기 자산배분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비중을 도출합니다. 또한 자산 별 투자비중을 토대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추</p>	<p>제2부 9, 가. (1) 투자전략 1)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연환산 6% 내외로 설정하고, 자산 별 기대수익과 허용 위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률 달성 추구를 위한 최적화된 중장기 자산배분 안을 주기적으로 도출합니다. - 기준금리, 크레딧 스프레드, 경제 성장률, CPI 추이, 배당 수익률 및 관련 자산의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군 별 장기 기대수익 및 위험을 산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배분안을 구성합니다. - 여러 효율적 배분안 중, 장기 투자로 인한 손실 확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 할 수 있는 배분안을 중장기 자산배분 안으로</p>

	<p>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스타일 배분안을 통해 선정된 집합투자증권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	<p><u>선정합니다.</u></p> <p>2) 중장기 자산배분 <u>안</u>을 바탕으로 자산 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합니다. 글로벌 경기 국면 및 자산 별 상대 매력도 등 기대 수익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자산 별 투자 비중을 <u>도출하며 해당 비중은 허용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.</u> 최종 포트폴리오는 주로 해당 자산의 대표지수(Index)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되며,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자산군 내 스타일, 섹터, 국가 등 해당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p>
--	---	---

2. 변경(예정)일: 2022년 09월 01일(목)